#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(이명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16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0.

발 의 자: 이명녀, 강혜순, 박경흠,

문기호, 안영호, 문희성, 김도운, 김태욱, 정재환,

홍영진

### 1. 제정이유

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
라. 청년상인 사업, 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(안 제5조~ 제6조)

마. 업무의 위탁(안 제7조)

## 3. 근거법규

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6조

나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제6조의2

# 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# 5. 참고사항

가. 조례안 예고: 2022. 11. 2. ~ 11. 9.(7일간)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청년상인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.
  - 1.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할 것
  - 2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이 대표로서 제1호의 영업장을 경영할 것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청년상인 육성 계획의 수립) 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구 청년상인 육성 계획(이하 "육성 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1.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
  - 2. 청년상인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
  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청년상인 사업)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1.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
- 2.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
- 3.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(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)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, 우수자의 선발 방법,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- 제7조(업무의 위탁)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근거법규

# □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
- 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 - 1. 창업에 따른 임대료 및 점포개선 지원
  - 2. 창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
  - 3. 창업 성공사례 발굴 · 포상 및 홍보
  - 4. 그 밖에 청년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

# □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

제16조(청년상인의 육성) 법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상인"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시장·상 점가·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 업한 사람을 말한다.

#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○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항제4호

## 2. 미첨부 사유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 경영관리 제고 관련 예산 기 확보 및 시행 중으로 추가적인 예산수반 없음
- 의안의 내용이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

## 3. 작성자

○ 소 속: 지역경제과

○ 직 급: 지방행정주사

○ 이 름: 안소정

○ 연락처: 290-4491